

# (가칭)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

2017.2 | 관계기관 합동

## 목 차

---

**I .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**

**II .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추진 현황**

**III .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방향**

# I .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

---

# 1.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(2016. 9. 1. 발표)

## 현황 및 문제점

- RP 거래가 익일물에 과도하게 편중  
\* (13년) 70.1% → (15년) 81.5%
-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  
\* 담보가치 급락 등으로 RP 차환 실패시, 담보를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익일 유입
- RP 활용도 제약  
\* 해외 채권투자자들이 일시적 자금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기일물 시장 부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  
→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**투자매력 저해 요인**

-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미흡  
\* 개별 업권법에서 금융상품 발행·유통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규율 → **체계적 규율에 한계**
- 단기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 
\* 관련 리스크 점검에 한계

## 개선 방안

###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

- 제약요인 해소
  - 담보채권 대체절차 간소화
  - RP 시장 참여자 확대
  - 공공부문 RP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
- 시장 조성기능 강화
  - PD, OMO 대상기관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
  - 증권금융의 시장조성기능 강화

###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

-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
  - 단기금융거래에 대한 보고·공시 체계 마련
  - 단기금리 산출·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 등

## Ⅱ.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추진 현황

---

1.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현황
2.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

# 1.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현황

## ① 담보채권 대체절차 간소화

- TF 논의, 시장참가자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시스템(GCF) 개선 중
  - 사전 포괄동의를 통해 담보채권 교체시 건별 동의절차 생략
  - ①담보채권 바스켓 구성, ②거래기간, ③증거금융, ④처분제한 옵션 등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
- 17.상반기 GCF 개발 완료 → 17.7월 GCF 오픈 및 관련 내규 개정 완료 예정

## ② 공공부문 RP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

- 증권금융, 예탁원, 거래소 : 업무량에 비례하고 기일물 거래에 유리하도록 수수료체계 개편
- 17.4월 시스템 개편 등을 반영하여 각 기관별 시행 예정

## ③ PD·OMO 대상기관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

- 국채와 통안채 시장조성자로서 PD·OMO 대상기관 평가시 기일물 RP 거래 실적 확대 반영
- 17년중 PD 평가기준에 반영 및 OMO 대상기관 선정기준 확대 반영 예정

# 1.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현황

## ※ 공공부문 RP거래 수수료체계 개편 내역

- **증권금융** : 거래기간에 따른 구간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할인

거래 기간	현 행	개 편 안
1 ~ 6일	1억원당 80원	1억원당 80원
7 ~ 14일		1억원당 60원
15 ~ 29일		1억원당 50원
30 ~ 89일	1억원당 60원/40원	1억원당 40원
90일 이상	1억원당 40원	1억원당 30원

- **증권예탁원** : 기일물 거래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차등화

구분	현 행	개 편 안	
수수료 기준	1억원당 20원	거래 첫날	1억원당 20원
		2일 이후	1억원당 18원

- **거래소** : 7일물 이상에 대해 거래수수료율 인하

구분	현 행	개 편 안	
거래 수수료	2,560원* + 0.00001536%	1 ~ 6일물	2,560원* + 0.00001536%
		7일물 이상	2,560원* + 0.00001459%(△5%)
청산결제 수수료	400원* + 0.0000024%	현행 유지	

\* 거래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적용

## 2.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

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: 17.2월 입법예고 → 4월 개정 · 시행

### ① RP시장 참여자 확대

- RP만기의 다변화 ·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**일임계약, 연기금, 일부 공공기관**이 RP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-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 안
•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자금을 RP거래에 활용 불가	•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자금도 안전자산*에 기초시 RP거래 허용 * 국채, 통안채, 지방채, 특수채 및 정부가 지급보증한 채권
• 연기금 및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자금중개사의 중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RP 거래 불가	• 자금중개사의 중개대상 확대 *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, 한국투자공사, 공제업자 등

### ② 증권금융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

- 증권금융을 통한 기일물 RP거래 규모 확대를 위해 **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 · 운용을 허용**
-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 안
• 증권금융은 콜운용 · 차입 불가	• 증권금융에 콜운용 · 차입 허용 • 증권금융의 일별 콜머니(콜론)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 RP매수(매도) 잔액 범위내로 한정

## Ⅲ.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방향

---

1. 제정 배경 및 경과
2. 법률안의 체계
3. 총칙
4. 거래 정보의 보고
5. 시장 금리 및 거래 정보의 공시
6. 지표금리
7. 감독
8. 기대효과
9. 향후 일정

# 1. 제정 배경 및 경과

## 단기금융시장의 신뢰성 · 안정성 제고 + 시장 위험요인 발생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

### 거래정보 접근성 개선

-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금융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보 접근이 사실상 곤란

\*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및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한계

➡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

### 금리산출의 신뢰성 제고

- 코픽스, 코리보 등 금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신뢰성 · 안정성 미흡

\* 단기금리는 가계 · 기업대출 등 국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

➡ 금리산출 중단시 금융시장 안정 저해 가능성

### 국제적 정합성 제고

- 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단기금융거래의 취약성 지적

➡ 美 · EU · 英, 단기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추세 (FSB도 정책권고)

- 美 연준 감독규정
- EU 증권파이낸싱거래규정 등

###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추진 경과

- 2016년 3월 ~ 8월 :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/F 및 업권별 의견 수렴 (40여 차례)
- 5월 ~ 8월 : 해외 입법사례 조사 (유럽, 미국 등, 자본시장연구원)
- 8월 17일 : 정책 세미나 실시
- 9월 1일 :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(금융위, 기재부,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)
- 9월 ~ : 후속조치 T/F 운영

## 2. 법률안의 체계

### 총칙

- 목적 및 정의

### 자금중개회사

- 자금중개회사의 인가, 행위 규제 등
  - \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이관하여 규정

### 거래 정보의 보고

-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\*, 보고 절차 및 방법
  - \* (콜거래) 자금중개회사, (RP/CD/CP/전단채) 예탁결제원, (장내RP) 거래소, (직접거래) 금융회사 등
  - \* 금융위 및 한은에 매일 보고

### 거래 정보 및 금리 공시

-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산출·공시\*
  - \* (콜거래) 한국은행, (RP/CD/CP/전단채) 예탁결제원, (호가 CD/CP/전단채) 금투협, (코리보/코픽스) 은행연
- 거래 정보 및 시장 금리의 공시 절차 및 방법

### 지표금리

- 지표금리의 요건 및 지정
-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조치 사항
- 지표금리 관리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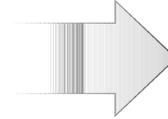
### 감독·보칙

- 금융회사 등의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
- 자금중개회사 등에 대한 검사 및 처분

# 3. 총칙

## 목적

- 금융회사 등의 건전한 단기금융거래 질서 확립
-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·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



금융시장 안정 도모  
국민경제 이바지

## 정의

- **단기금융거래** :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, RP매매, CP 발행 · 매매, CD 발행 · 매매 등

구분	현행	제정안
콜 거래	• 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 자금 거래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 342②)	• 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등간에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차하는 거래
RP 매매	•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(환매도)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(매수)하는 거래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 81①, § 85)	•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(환매도)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(매수)하는 행위
CP	•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것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 4③)	• (자본시장법을 인용하여 규정)
전자단기 사채	• 특정 요건을 만족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채무증권(전단채법 § 2①)	• (전단채법을 인용하여 규정)
CD	• (정의 규정 없음)	•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증서로서 은행의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

- **단기금융거래 금리** : ① 개별 단기금융거래 및 그 호가에 기반한 금리(콜금리, RP · CD · CP · 전단채 금리)와 ② 코리보(KORIBOR), 단기 코픽스(COFIX) 금리
- **지표금리** : 금융계약 상의 채권 · 채무 가액의 결정, 금융상품 거래 가격의 산정 및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지표금리로 지정된 금리

# 4. 거래 정보의 보고

적용 범위

- 보고 대상 :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. 단, 국가 및 한국은행이 그 거래의 어느 일방인 경우는 제외

정보 보고

- 자금중개회사 · 예탁결제원 · 거래소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

구분	현행	제정안
콜 거래	• 자금중개회사가 매월의 중개업무 내역을 금융위에 보고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 346④)	• 자금중개회사가 금융회사 등의 콜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
RP 매매, CD · CP · 전단채 발행 등	• 자금중개회사가 매월의 중개업무 내역을 금융위에 보고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 346④) •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채권중개전문회사는 거래 및 매매 내역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(금투업규정 § 5-24② 등)	• 예탁결제원이 예탁된 증권의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단기금융거래 정보*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 * RP매매 정보, CD · CP · 전단채 발행 · 매매 정보
장내 RP 매매	• (없음)	• 거래소가 장내 RP매매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

- 금융회사 등은 자금중개회사,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를 통해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가 아닌 단기금융거래(금융회사간 직접거래 등)의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직접 보고

보고 절차 등

- 자금중개회사,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는 ①보고 절차 · 방법, 보고한 정보의 오류 통제 및 정정 절차 · 방법을 정하고, ②기술적 · 물리적 ·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 · 시행

# 5. 시장 금리 및 거래 정보의 공시 ① ②

## 공시

-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**단기금융거래의 금리**를 매 영업일마다 산출하여 **그 금리와 거래 정보**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

구분	현행	제정안
콜금리, 거래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일별로 공시(근거 법령 없음)</li> <li>•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일별로 공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은행이 콜거래 금리를 매 영업일마다 산출하여 콜거래 금리와 콜거래 정보를 공시</li> </ul>
RP·CD·CP·전단채 금리 및 거래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라 상이한 정보를 공시 (금융투자업규정 § 5-8③, § 5-5①ii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탁결제원이 금리를 매 영업일마다 산출하여 금리와 거래 정보를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RP매매 금리 및 정보</li> <li>- CD 발행·매매 금리 및 정보</li> <li>- CP·전단채 발행·매매 금리 및 정보</li> </ul> </li> </ul>

- 금융투자협회가 **CP, 전단채, CD의 호가 금리**를 산출하여 공시

구분	현행	제정안
CP·전단채 호가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규정* 및 내부규정에 따라 공시(* 금융투자업규정 § 5-5①ii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금중개사로부터 호가를 제출 받아 산출한 CP·전단채, CD의 최종호가금리를 공시</li> </ul>
CD 호가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규정* 및 내부규정에 따라 공시(* 금융투자업규정 § 5-8③)</li> </ul>	

- 은행연합회는 **코리보(호가금리) 및 단기 코픽스**를 산출하여 공시

구분	현행	제정안
코리보·단기 코픽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은행연합회가 산출·공시(근거 법령 없음)</li> <li>* 코리보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/ 코픽스 관리지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은행연합회가 산출·공시</li> </ul>

## 5. 시장 금리 및 거래 정보의 공시 ① ②

### 공시 절차· 방법

- 한국은행, 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공시 대상 금리·정보의 산출·공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
- 금리·정보의 산출·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(예시) → 시행령에서 규정
  - 구체적인 단기금융시장 금리 및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산출 절차·방법
  - 단기금융시장 금리 및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공시 절차·방법
  - 정보제공기관(금리 산출·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)에 관한 사항
  - 정보제공기관이 금리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·절차
  - 금리·정보 산출에 오류 발생시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·방법
  - 금리·정보 산출과 관련한 기술적·물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등

### 거래 정보 제공

-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채무증권 장외거래의 공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제공

### 이해 상충 방지

- 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기관·임직원과 단기금융거래 당사자간 또는 단기금융거래 당사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

## 6. 지표금리 ① ②

### 지표 금리 지정

- 금융위원회는 예금자·투자자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를 **지표금리로 지정** 가능
  - ① 공공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
  - ② 미리 정하여 공표된 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산출될 것
  - ③ 기초자산의 가치·가격, 단기금융거래 금리(호가 포함),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금리 등에 기초하여 산출될 것
  - ④ 대출, 금융투자상품 거래, 그 밖의 금융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될 것
- 단, 해당 금리가 산출되지 않거나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·기업, 금융회사 등의 원활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④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리라도 **지표금리로 지정** 가능

### 관리 기관

- 금융위원회는 지표금리를 지정하는 경우, **지표금리 관리기관\***을 지정  
\* 지표금리를 산출·공시하고 그 산출·공시의 절차 및 방법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
- 지표금리 관리기관은 ①**지표금리 산출·공시의 절차 및 방법**을 마련하여 공개하고, ②**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** → 단, 지정된 지표금리가 단기시장거래 금리인 경우, 해당 금리와 관련한 금리 산출·공시 절차 및 방법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같음 가능

## 6. 지표금리 ① ②

### 신뢰성 확보

-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표금리가 시장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가능
- 금융위원회는 지표금리가 시장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정보제공기관의 지정, ②지표금리 관리기관, 정보제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등 조치 가능
- 한국은행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에 요청 가능

### 금융 회사 의무

- 금융회사 등은 지표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
  - ① 산출이 중단된 지표금리를 대체하여 사용할 다른 지표금리(대체 지표금리)의 결정
  - ② 대체 지표금리를 새로운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
  - ③ 대체 지표금리를 기존의 금융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등
- 금융회사 등은 조치 계획을 지표금리와 연계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계약 관계에 반영해야 함. 다만, 계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❖(부칙) 조치 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금융계약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금융계약에 한정. 단,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

## 7. 감독

### 위험 관리

- 금융회사 등은 단기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준(→ 감독규정에서 구체화)을 준수하여야 함
  - ① 콜거래의 거래당사자 제한에 관한 사항
  - ② 콜거래를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차입 한도에 관한 사항
  - ③ RP 대상 증권의 담보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등
- 한국은행은 유동성 위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에 요청 가능
-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·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중개사, 예탁결제원, 거래소에 단기금융거래와 관련한 만기 1년 이상의 거래 정보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

### 검사 제재

- 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, 거래소, 은행연합회 및 지표금리 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함
-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, 거래소, 은행연합회 및 지표금리 관리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·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, 그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 가능

## 8. 기대효과

**단기금융시장의 법적 규율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**

### 단기금융시장 리스크 축소 및 신속한 정책적 대응 가능

- 개별 금융회사와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
- 특히, 금융위, 한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

###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· 신뢰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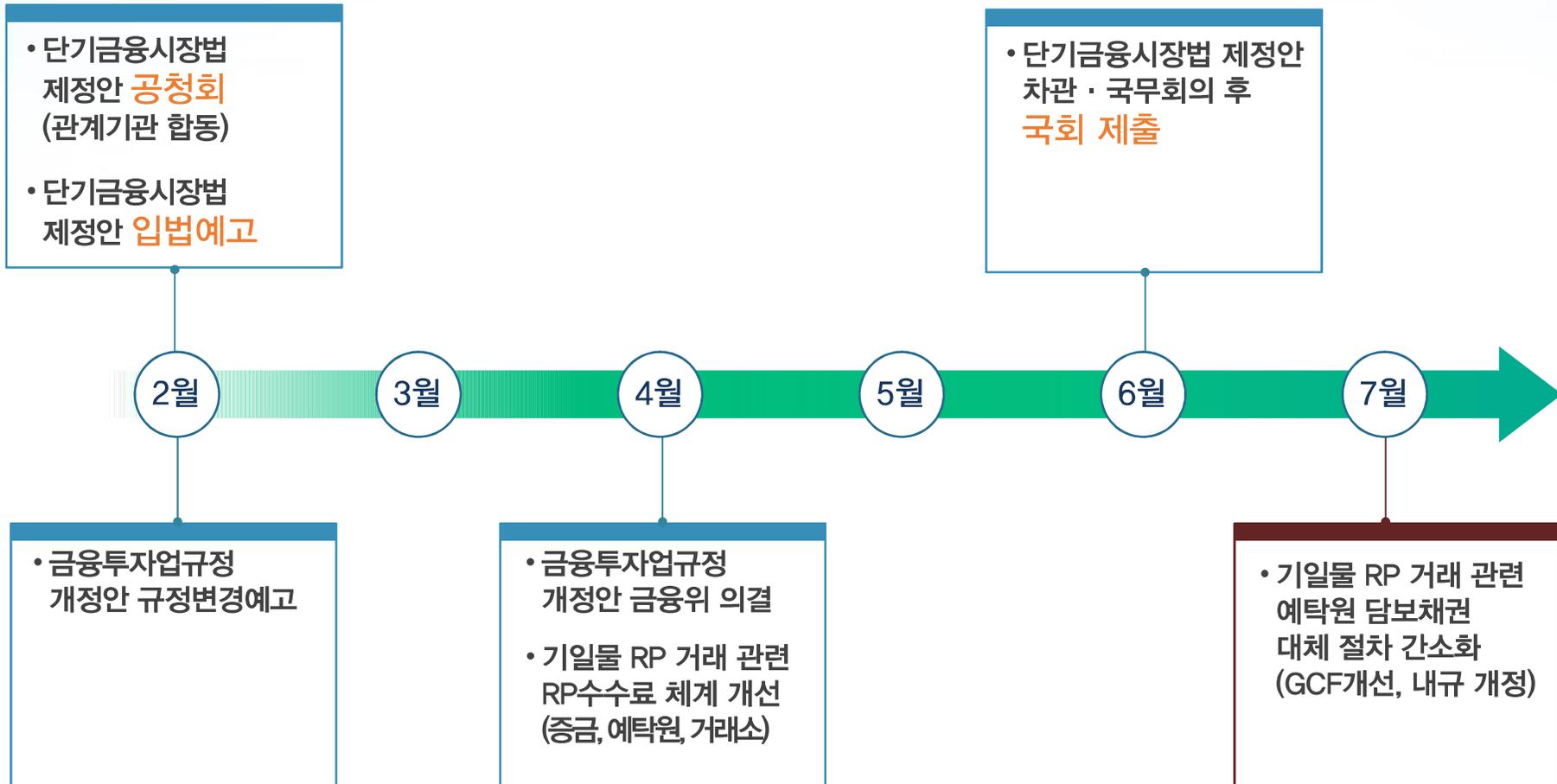
-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 · 금리 등이 충분히, 적시에 시장에 제공되면서 단기금융거래의 효율성이 제고
- 사전에 마련하여 공개하는 방법 ·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금리를 산출 · 공시함으로써 단기금리의 신뢰성 제고가 가능

###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 및 체계적 대응 가능

- 금융거래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지표금리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

# 9. 향후 일정

17.2월 공청회,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국회 제출 추진





**감사합니다**